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73

발의연월일: 2021. 7. 7.

발 의 자:김진표·김병주·김수흥

김병기 • 박광온 • 박성준

박찬대 · 신정훈 · 이낙연

장철민 · 천준호 · 최종윤

홍영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 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법령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국방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사업타당성조사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더구나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개발 이후 즉시 양산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생산단절로 인한 방산업체의 설비·인력 유휴 및 단가상승, 개발된 신기술의 진부화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적기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가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역시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률 에 확실히 명시함.
- 나. 개발 이후 무기체계 양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타당성조사에 포함해 실시함(기존에 하던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생략).
- 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증가 및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에 기존 한국국방연구원 단일기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 하여 이원화함(안 제14조의2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착수 이 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 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개발 이후 양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 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 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 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 방</u>	[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 ·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한 한 한 의 의 한 한 타 1. 2 2. 1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기 위하여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 ·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 ·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 체계사업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 매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방연구 개발사업(개발 이후 양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 함하여 실시한다)

음 각 호의 자를 지정하여 수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 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 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 가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 2. 「<u>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u>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 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 준, 조사방법 및 절차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 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한다.